

붙임 3

응시자 편의지원 안내

- (지원대상)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자
- 유형별 편의지원 및 제출서류

장애유형		편의지원내용	제출서류	
시각장애	1급~2급	· 시험시간 1.7배 연장	· 장애인증명서 1부	
	3급2호 4급2호		· 장애인증명서 1부 · 의사진단서 1부 (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기재되어야 함)	
	3급~4급, 5급1호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	· 장애인증명서 1부	
	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5~6급		· 장애인증명서 1부 · 의사진단서 1부 (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기재되어야 함)	
	공통(1~6급)	· 확대(축소)문제지 제공 · 확대답안지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· 장애인증명서 1부	
뇌병변	1~3급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· 대필	· 장애인증명서 1부	
	4~6급		· 장애인증명서 1부 · 의사진단서 1부 (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기재되어야 함)	
	공통(1~6급)	· 확대(축소)문제지 제공 · 확대답안지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 책상 · 별도 시험실 배정	· 제출서류 없음	
지체장애	상지	1~3급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 · 대필	· 장애인증명서 1부
		공통(1~6급)	· 확대(축소)문제지 제공 · 확대답안지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 시험실 배정 · 휠체어 전용 책상	· 장애인증명서 1부
	하지	공통(1~6급)	· 휠체어 전용 책상 · 별도 시험실 배정	· 장애인증명서 1부
청각장애	공통(2~6급)	·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· 장애인증명서 1부	
기타장애	임신부, 과민성대장(방광) 증후군 질환자 등	· 시험 중 화장실 이용(단, 시험시간에 포함됨) · 높낮이 조절 책상 · 별도 시험실 배정	· 의사소견서 1부	
	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인 신체장애	·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	· 의사진단서 2부 (상이한 종합병원에서 각 1부씩 발급)	

○ (접수기간) 2023. 10. 5.(목) 14시 ~ 10. 12.(목) 14시까지

○ (제출서류)

- 장애인증명서 1부

※ 인터넷 정부24,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, 성명 및 장애유형, 등록번호 외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

- 의사진단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(제출방법) 원서접수 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서류 업로드

○ 유의사항

가.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해당여부, 구비서류 및 편의제공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상이등급자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먼저 확인하고, 해당되는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[의사진단(소견)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]

나. 의사진단(소견)서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 종합병원)에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(소견)서만 인정됩니다.

* 임신부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.

* 종합병원 여부 확인: 건강보험심사평가원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찾기]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*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
다. 의사진단(소견)서 발급 시에는,

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(아래 표 녹색 표시),

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(아래 표 적색 표시),

③ 편의제공 내용(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시험시간 연장 등)의 필요한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(아래 표 노란색 표시)

유 형	등급 (정도)	예 시
시각 장애	6급	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에 해당하는 자 로서, 시각장애로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.
뇌병변 장애	경 중	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 로서 손,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작성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.
임신부	-	상기인은 임신 6주의 임신부로 자궁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어려워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.

※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(상급)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 불인정)

라.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‘의사진단(소견)서’를 검토하여 편의지원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합니다.

* 기타 사유 등으로 편의지원을 신청하려면 편의지원 신청서, 장애인 증명서, 의사진단(소견)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편의지원 여부는 시험 실시기관에서 검토하여 처리합니다.

마.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-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
- 증빙서류(의사소견서 및 진단서)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
-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

바. 대필은 수험생 본인이 확대답안지에 기재하고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 입회하에 ‘OMR 답안지에 옮겨 적습니다.